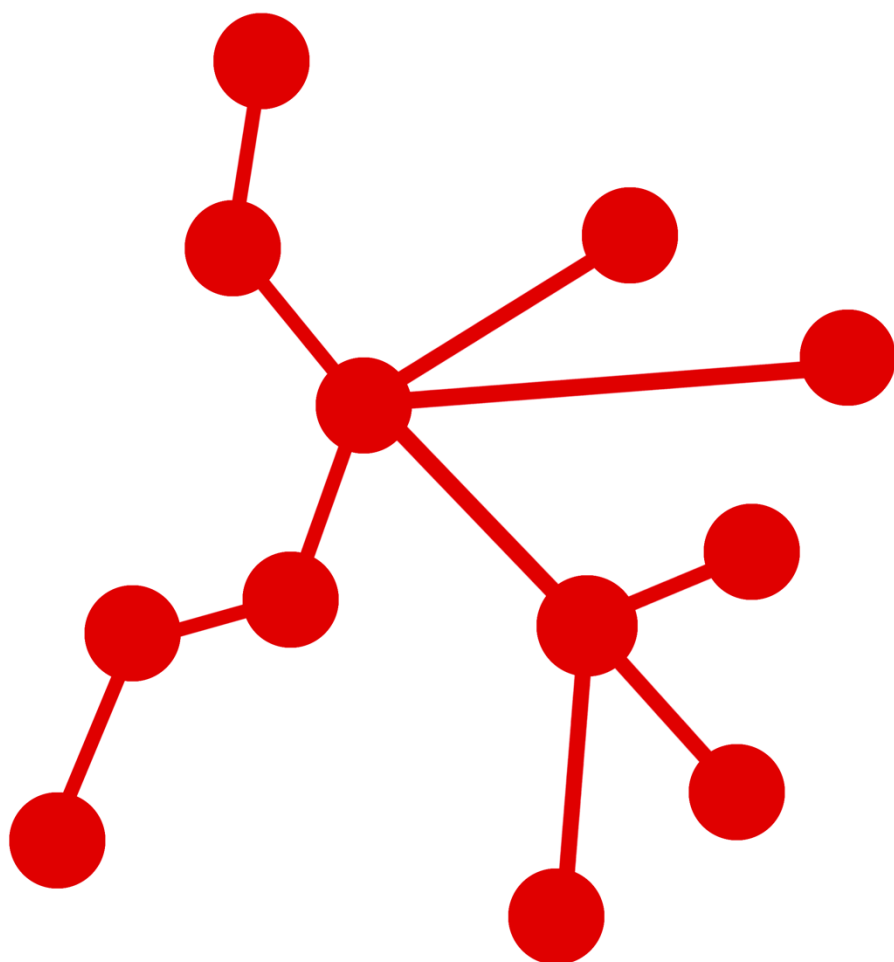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회칙

[개정 2022.06.27.]

전문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수호하는 한의학도로서 우리의 학문을 심화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며 나아가 인류를 질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케 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가치구현과 민중의료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국민건강권 확보와 민족의학 사수에 저해되는 제반요인을 극복하는 사명이 우리의 임무임을 천명한다. 이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한의학도로서의 양심과 인격을 수련하며 민중의 고통과 현존하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데 본 회원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회원 상호간의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대학문화의 창달을 도모하여 대학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민중과 역사가 요구하는 지도적 자질을 계발한다.

학원의 민주화와 민중의료의 역사적 소명하에 한의과대학 모든 학우의 하나된 의지로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회칙을 1995년 7월 21일 개정하는 바이다.

2008년 1월 4일 변화한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운영을 통해 우리 한의학도들의 사명을 보다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재개정한다.

2017년 5월 16일 학우들이 주인 되고 보다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총투표를 통해 회칙을 재개정한다.

2018년 1월 20일 새로운 의료사회에 적합한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의 운영을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27일 전한련의 재단결과 화합을 위하여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회칙을 새로 쓰는 바이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① 본회는 민족의학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한 한의학도의 학문적 연마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권 확보와 민족의학의 사수를 위하여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의학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전국 한의학도가 연합함으로써 한의학도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회는 개별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를 도와 한의학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는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06.27.]

제 2 조(명칭) ① 본회는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본회")이라 한다.

② 본회의 다른 이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한련
2.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students
3. NAKM

③ 다음 각 호의 기구의 다른 이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대표자회
가. 전한대회

2. 지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대표자회
가. 지역한련
3. 동부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대표자회
가. 동한련
4. 서부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대표자회
가. 서한련
5. 북부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대표자회
가. 북한련

[전문개정 2022.06.27.]

제 3 조(회원) ① 입학·편입학·소속변경 등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받은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 전문대학원 소속이 된 사람은 본 회의 회원이 된다.

② 사망·이민·졸업·자퇴·퇴학 등으로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 아니게 된 사람은 소속이 아니게 된 날의 다음날 본 회의 회원이 아니게 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한대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은 사람은 제 1 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06.27.]

제 4 조(일반회원과 참여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이 있다.

②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일반회원: 제 3 조에 따른 본 회의 회원

2. 참여회원: 제 214 조에 따른 사업 회비를 납부한 본 회의 회원

③ 일반회원은 본 회의 의결기구, 기초단위기구와 독립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참여회원은 본 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기초단위기구, 독립기구와 특별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 각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일반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5 조(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지닌다.

1.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의 활동에 대하여 의사를 개진할 권리

3.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

4. 본 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에게 회원의 사무처리를 요청할 권리

5.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6.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7.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제 1 항 각 호의 권리가 침탈되었을 때, 본 회의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총회, 전한대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은 사람은 제 2 항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 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3. 품위를 유지할 의무

[본조신설 2022.06.27]

제 7 조(기구 및 구성체계) ① 본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각 목의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가. 학생총회
 - 나. 총투표
 - 다. 전한대회
2. 집행기구
 - 가. 중앙집행위원회와 집행국
 - 나. 비상대책위원회
3. 기초단위기구
 - 가. 상임위원회
 - 나. 지역한련
 - 다.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4. 독립기구
 - 가. 감사위원회
 - 나. 회칙해석위원회
5. 특별기구
 - 가. 자문위원회
 - 나. 특별위원회

② 본 회칙에서 규정한 권리, 업무, 권한과 의무는 각 기구와 각 단체간 위임될 수 없으며, 각 기구와 각 단체는 본 회칙에서 명시한 권한과 의무만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 조(연대활동) ① 본 회의는 본 회 및 본 회의 회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대활동을 할 수 있으며, 연대활동을 위한 단체의 가입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본 회의는 필요한 경우 여타 단체의 가입, 인사접촉 등의 연대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본 회의는 다른 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할 때 전한대회 동의를 통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장
2. 부의장
3. 회장

[본조신설 2022.06.27.]

제 9 조(기구간 분립) ① 의결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집행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회의 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 단, 집행기구 내부의 집행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에서의 의결은 진행할 수 있다.

③ 독립기구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회칙에서 밝힌 범위 내에서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집행 전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 즉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초단위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전한대회의 요청이나 안건 위임 없이 독립적으로 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

⑤ 특별기구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규칙에서 밝힌 범위 내에서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집행 전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 즉시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 조(겸직금지)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2 개 이상 가질 수 없다.

1. 의장
2. 부의장
3. 회장
4. 감사위원장
5. 회칙해석위원장
6. 특별위원장

[본조신설 2022.06.27.]

제 10 조의 2(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집행기구에 소속되거나, 본 회의 집행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1. 상임위원
2. 전한대회 대의원 (단,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대의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
4. 회칙해석위원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장 의결기구

제 1 절 의장

제 11 조(지위) 의장은 본 회의 의결기구의 대표자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 조(선출) ① 의장은 학생총회를 통하여 선출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한대회 선거일 전까지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한대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3 조(임기) 의장의 임기는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의 개회일부터 다음해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의 개회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4 조(권한) ① 의장은 의결기구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전한대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해의 감사위원장 중 1 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5 조(의무) ① 의장은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다음 의장에게 적절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다음 의장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본 회 기구에, 본 회칙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실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본 회의 집행 업무

2. 본 회의 사무

3. 본 회의 재무

4. 본 회의 기록 업무

[본조신설 2022.06.27.]

제 16 조(사임) ①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임서를 제출하고,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사임할 수 있다. 사임서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② 의장이 사임하면 부의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③ 의장이 본 회의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한대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7 조(탄핵) ① 의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소추(訴追)될 수 있다.

1. 전한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2. 본 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

② 의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세한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1. 탄핵안의 발의 이유

2.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3. 대표 발의인

③ 탄핵안이 소추(訴追)된 때부터 의결될 때까지 의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순서대로 임시의장이 될 수 있다. 단, 전한대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부의장

2. 전한대회 대의원

3. 본 회의 회원

④ 임시의장은 탄핵안 소추(訴追) 일주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투표를 실시하여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탄핵안 의결 시행 방식은 전한대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절 부의장

제 18 조(지위) 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闕位)일 때에 의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 조(임명) 부의장은 의장이 전한대회 대의원 중 1 명을 정하여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0 조(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제 13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 조(권한 및 의무) ① 부의장은 제 14 조의 권한을 지니지 아니한다. 단, 의장이 궐위일 때에는 제 14 조에 따른 의장의 권한이 부의장에서 위임된다.

② 부의장의 의무는 제 15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 조(사임) ①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의 동의를 통하여 사임할 수 있다. 단, 의장은 부의장의 사임에 동의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부의장의 사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부의장이 사임하면, 의장은 전한대회 대의원 중에서 1 명을 부의장으로 새롭게 임명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이 본 회의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의장은 48 시간 이내에 부의장의 사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3 조(해임) ① 의장 또는 전한대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의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단, 의장은 전한대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상임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 또는 전한대회에게 부의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학생총회, 전한대회 또는 의장에게 부의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른 사임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2 호의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해임안의 발의 이유

2.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3. 대표 발의인

[본조신설 2022.06.27.]

제 3 절 학생총회

제 24 조(지위)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 조(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6 조(의장) ① 학생총회의 대표와 진행은 의장이 맡는다.

② 의장이 궐위일 때에는 전한대회에서 의결 받은 임시의장이 의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세부사항은 제 17 조 제 3 항 각 호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7 조(권한) ① 학생총회는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학생총회는 의장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③ 학생총회는 부의장, 중앙집행위원회원과 특별위원회를 해임할 수 있다.

④ 학생총회는 본 회의 예결산, 활동 계획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⑤ 학생총회는 전한대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번복할 수 있다.

⑥ 학생총회는 본 회의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학생총회는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8 조(소집)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집요구를 통하여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소집한다.

1. 전한대회 의결

2. 전한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3. 본 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

4. 제 17 조 제 4 항에 따른 의장 탄핵안의 의결

② 제 1 항의 소집요구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9 조(소집에 따른 사무) ①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학생총회 개회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총회 개회일은 소집요구 서식에 밝혀져 있는 개회 희망일을 우선하여야 한다.

③ 학생총회 개회일의 변경은 개회 희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으로도 학생총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30 조(소집공고) ①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학생총회 소집을 개회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회일

2. 개회시간

3. 회의장소 및 온라인 주소

4. 학생총회 안건

5. 각 안건에 대한 설명

③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제 2 항의 4 호와 5 호의 내용을 따로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일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한대회의결을 거쳐 소집공고를 개회일 1 일 전까지 미룰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31 조(운영 방안의 결정) ① 회장은 학생총회 개회일 전에 공론회를 개최하여 학생총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공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총회의 운영 방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중앙집행위원회는 공론회의 결과와 맞지 아니한 방안을 확정할 수 없다.

③ 회장은 제 2 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 방안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32 조(특수한 상황에서의 운영 방안의 결정) ① 제 31 조 제 1 항과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개회일 전에 공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공론회 없이 학생총회의 운영 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 1 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 방안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라 운영 방안을 확정하였을 경우, 의장은 학생총회에 “학생총회 운영 방안의 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의 안건은 다른 안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안건의 의결 없이 진행된 학생총회는 의결의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33 조(개회) 학생총회는 재적인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6.27]

제 34 조(출석요구) ①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특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회일 3 일 전까지 출석요구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석요구일

2. 출석요구 시간

3. 출석요구 이유

③ 출석요구 대상자가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석사유서를 학생총회 개회일 1 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석요구 대상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서 내용에 대한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전한대회는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결석사유서 또는 답변서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⑥ 출석요구서, 결석사유서와 답변서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35 조(의결) ① 학생총회는 출석인원의 1/2 초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찬성이 반대와 동률일 경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06.27.]

제 36 조(안건)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1.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상정한 안건
2. 전한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상정한 안건
3. 본 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상정한 안건
4. 제 17 조에 따른 의장 탄핵안
5. 제 179 조 제 2 항에 따라 회칙해석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본조신설 2022.06.27.]

제 37 조(결과공고) ① 학생총회가 종료되면 의장은 24 시간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회일
2. 개회시간
3. 회의장소 및 온라인 주소
4. 학생총회 안건
5. 각 안건의 의결 결과

[본조신설 2022.06.27.]

제 38 조(안건의 위임) ① 학생총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일주일 이내에 회칙해석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전한대회로 위임할 수 있다.

② 제 36 조 제 1 항 4 호와 5 호의 안건은 회칙해석위원회 의결이 있더라도 제 1 항에 따라 위임할 수 없다.

③ 의장은 회칙해석위원회의 위임 결정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한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칙해석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안건이 위임된 즉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임된 안건
2. 위임된 이유
3. 회칙해석위원회 실명 표결 결과
4. 다음 전한대회 회의 날짜

⑤ 회칙해석위원회에서 위임 결정이 나지 아니한 안건은 폐기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 절 총투표

제 39 조(지위) ① 총투표는 본 회의 최고의결투표이다.

② 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를 통한 의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전문개정 2022.06.27.]

제 40 조(구성) 총투표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1 조(의장) ① 총투표의 대표와 진행은 의장이 맡는다.

② 의장이 궐위일 때에는 전한대회에서 의결 받은 임시의장이 의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세부사항은 제 15 조의 제 3 항 각 호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2 조(권한) ① 총투표는 회칙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총투표는 의장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총투표는 부의장, 중앙집행위원회원과 특별위원회를 해임할 수 있다.

④ 총투표는 본 회의 예결산, 활동 계획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⑤ 총투표는 전한대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번복할 수 있다.

⑥ 총투표는 기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3 조(시행) ①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행요구를 통하여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시행한다.

1. 전한대회 의결

2. 전한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3. 본 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

4. 제 17 조 제 4 항에 따른 의장 탄핵안의 의결

② 제 1 항의 시행요구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4 조(시행에 따른 사무) ① 총투표 시행기간은 시행요구 서식에 밝혀져 있는 투표 희망기간을 우선하여 한다.

② 총투표 시행기간의 변경은 투표 희망기간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총투표 시행기간은 일주일을 넘을 수 없다.

④ 총투표 시행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본 회의 회원 1/2 이상의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을 5 일 이내의 기간으로 1 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5 조(중앙투표관리위원회) ①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총투표를 시행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투표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순서대로 될 수 있다.

1. 의장

2. 중앙투표관리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

③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과 회장을 제외한 전한대회 대의원은 중앙투표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투표 일시 확정

2. 총투표 운영 방안의 결정
3. 지역투표관리위원회 업무의 관리 및 감독
4. 총투표 관련 사무 및 재무
5. 기타 총투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2.06.27.]

제 46 조(기초투표관리위원회) ① 중앙투표관리위원장은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 기초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기초투표관리위원장은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으로 한다.
- ③ 기초투표관리위원회는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로 구성한다.
- ④ 기초투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총투표 진행
2.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내부 투표소 설치
3. 기타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내부 총투표 운영에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2.06.27.]

제 47 조(시행공고) ①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총투표 시행을 개최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시행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표일
2. 투표시간
3. 투표장소 또는 인터넷 주소
4. 총투표 안건
5. 각 안건에 대한 설명

- ③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제 2 항의 4 호와 5 호의 내용을 따로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8 조(총투표 시행 방안) ① 총투표는 본 회의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시행된다.

- ② 총투표는 오프라인 전자 또는 실물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총투표는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에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 운영 등에 대하여서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9 조(시행) 총투표는 본 회의 회원의 1/2 이상의 투표로 성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50 조(의결) ① 총투표는 투표인원의 다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찬성이 반대와 동률일 경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06.27.]

제 51 조(안건) ①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1.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상정한 안건
2. 전한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상정한 안건

3. 본 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상정한 안건

4. 제 17 조에 따른 의장 탄핵안

[본조신설 2022.06.27.]

제 52 조(개표사무) ① 개표사무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개표장소는 중앙투표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③ 본 회의 회원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단, 개표사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중앙투표관리위원장은 개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을 경고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53 조(개표절차) ① 개표는 총투표 종료 후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개표의 모든 과정에는 중앙투표관리위원 1/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중앙투표관리위원장은 개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54 조(무효처리) ① 한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명부상 투표자 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투표용지 수만큼 무효표로 처리한다.

② 명부상 총 투표자 수와 총 투표용지 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 수 대비 3%를 넘으면 해당 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③ 총투표 시행기간 연장 후에도 본 회의 회원 1/2 이상의 투표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총투표는 무효가 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55 조(결과공고) ①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투표관리위원회는 24 시간 이내에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투표 시행기간

2. 총투표율

3. 안건별 득표율

③ 총투표가 무효처리될 경우 그 사유를 본 회의 회원 모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5 절 전한대회

제 56 조(지위) 전한대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57 조(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한대회 대의원이 되며, 의결권을 지니고 정족수 등에 산입한다.

1. 의장

2. 부의장

3. 그 밖에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대의원 추천을 받은 자(단, 추천 과정은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내부 규정을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한대회 참관 대의원이 된다. 참관 대의원은 의결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정족수 등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1 호의 사람 중 제 1 항 1 호 또는 제 1 항 2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1 항의 사람으로 본다.

1. 회칙해석위원

2. 감사위원장

3. 회장

4. 부회장

5. 전한대회 의결로 참관 대의원 자격을 얻은 자

③ 제 1 항의 대의원 의석 수는 각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별로 3 명으로 한다.

④ 전한대회는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새롭게 설립·폐지 또는 개편을 인가받은 경우, 즉시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대의원 의석 수를 제 3 항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제 2 항 5 호에 따른 참관 대의원 요청을 의장에게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 5 항에 따른 요청이 들어온 즉시 제 4 항에 따른 의결을 진행하여야 하며,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특별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참관 대의원 의석 수는 위원회 당 1 명을 넘을 수 없다.

⑧ 제 1 항 3 호에 따른 대의원이 공석인 경우, 의장은 해당 의석을 정족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발언권을 지니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⑨ 제 8 항에 따른 대표는 제 2 항에 따른 참관 대의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06.27.]

제 58 조(의장) ① 전한대회의 대표와 진행은 의장이 맡는다.

② 의장이 궐위일 때에는 전한대회에서 의결 받은 임시의장이 의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세부사항은 제 17 조의 제 3 항 각 호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59 조(대의원의 권한) ① 대의원은 제 12 조 제 2 항에 따라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제 79 조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전한대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은 전한대회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은 전한대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0 조(대의원의 의무) ① 대의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 과정 전반에서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④ 대의원은 전한대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1 조(대의원의 결석) ① 대의원이 전한대회에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석사유서를 전한대회 회의 개회일 1 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이 제 1 항의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한대회 휴, o ,에 결석한 경우에는 개회일로부터 3 일 이내까지 결석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결석사유서 또는 결석소명서를 심의하고 처벌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과 제 2 항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⑤ 상임위원회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결석사유서 또는 결석소명서를 의결을 통해 본 회의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심의하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2 조(대의원의 권한위임) ① 제 61 조 제 1 항의 대의원은 제 61 조 제 3 항을 통해 정당함을 의결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위임은 권한위임서를 통하여 하며,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③ 대리인은 제 2 항의 권한위임서를 지참하여 전한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은 제 59 조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3 조(의장의 권한위임) ① 의장의 권한은 위임될 수 없다.

② 제 17 조 제 3 항에 따른 임시의장은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하며, 제 2 장 제 1 절의 의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4 조(참관) ① 본 회의 회원은 전한대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의결을 통하여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발언권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단, 다른 목적의 발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제 2 항에 따른 발언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즉시 전한대회 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다수의 발언권 의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5 조(권한) ① 전한대회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반복할 수 있다.

② 전한대회는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한대회는 산하 특별위원회의 결정 및 집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전한대회는 본 회의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한대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전한대회는 특별위원회의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경고 또는 제명을 의결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특별위원회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⑦ 전한대회는 중앙운영위원, 특별운영위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해당 위원이 제 50 조 제 1 항의 대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한다.

⑧ 전한대회는 회비의 인상 및 인하를 의결할 수 있다.

- ⑨ 전한대회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 ⑩ 전한대회는 세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⑪ 전한대회는 제 8 조에 따른 연대활동에 동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6 조(의무) ① 전한대회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정책
2.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장의 임명
3.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의 예산안
4.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의 결산안
5.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의 개국·개편 또는 폐국
6. 회장의 예산안
7. 회장의 결산안
8. 의결기구 운영 예산안
9. 의결기구 운영 결산안
10. 의장 및 부의장의 예산안
11. 의장 및 부의장의 결산안
12. 상임위원회 운영 예산안
13. 상임위원회 운영 결산안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 개최일 전까지 임시로 제 1 항 각 호의 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전한대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단, 4 호의 내용은 의결할 수 있다.

1.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정책
2. 특별위원회의 예산안
3. 특별위원회의 결산안
4. 특별위원회의 신설·개편 또는 해산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또는 회장은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 개최일 전까지 임시로 제 3 항 각 호의 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전한대회는 독립기구에 대하여 다음 1 호부터 3 호까지의 내용을 의결하여야 한다.

1. 독립기구의 사업계획
2. 독립기구의 예산안
3. 독립기구의 결산안

⑥ 전한대회는 본 회의 집행기구와 특별위원회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⑦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에 대한 의결은 다음 전한대회 회의 개최일까지만 유효하다.

⑧ 제 1 항, 제 3 항과 제 5 항의 예산안 또는 결산안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7 조(소집) ① 정기 전한대회 회의는 매반기 1 회 개최한다.

② 임시 전한대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집요구를 통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2. 중앙집행위원회 1/3 이상의 연서
3. 상임위원회 의결
4. 상임위원회 1/3 이상의 연서
5. 본 회의 회원 1/10 이상의 연서
6. 전한대회 대의원 3 명 이상의 연서
7.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의장의 요청
 - 가. 제 38 조에 따른 학생총회 안건의 위임
 - 나. 제 103 조에 따른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장의 해임 또는 사임 허가
 - 다. 제 87 조에 따른 부회장의 사임 허가
 - 라. 제 88 조에 따른 부회장의 해임 허가
 - 마. 제 81 조에 따른 회장의 사임 허가
 - 바. 제 82 조에 따른 회장의 탄핵안 의결
 - 사. 제 16 조에 따른 의장의 사임 허가
 - 아. 제 17 조 제 4 항에 따른 의장의 탄핵안 의결 시행 방식 의결
 - 자. 제 22 조에 따른 부의장의 사임 허가
 - 차. 제 23 조에 따른 부의장의 해임 허가
 - 카. 제 179 조 제 5 항에 따라 연기된 안건의 의결
 - 타. 회칙·세칙 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파.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의 처리

③ 제 2 항에 따른 소집요구의 서식은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④ 전한대회는 제 1 항과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초에 의장의 선출과 회장의 임명을 위하여 1 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이를 전한대회 선거라고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7 조의 2(청문회) ① 제 77 조 제 3 항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가 결정될 경우,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소집은 제 67 조 제 2 항 6 호 파목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소집에 따른 사무는 제 68 조를 준용한다.
3. 소집공고는 제 69 조를 준용한다.
4. 개회는 제 70 조를 준용한다.
5. 의결은 제 72 조 제 3 항 2 호를 따른다.
6. 결과공고는 제 74 조를 준용한다.

② 의장은 제 71 조에 따라 회장 후보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단, 회장 후보자는 제 71 조 제 4 항에 따른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없다.

③ 청문회 보고서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④ 회장 후보자가 청문회에 불참한 경우, 전한대회는 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8 조(소집에 따른 사무) ① 의장이 전한대회 회의를 소집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한대회 회의 개최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한대회 회의 개최일은 소집요구 서식에 밝혀져 있는 개최 희망일을 우선하여야 한다.

③ 전한대회 회의 개최일의 변경은 개최 희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전한대회 회의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개최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9 조(소집공고) ① 의장은 전한대회 회의 소집을 개최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최일

2. 개최시간

3. 회의장소 및 온라인 주소

4. 전한대회 회의 안건

5. 각 안건에 대한 설명

6. 전한대회와 상임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 사항

7. 의결기구, 집행기구와 산하기구의 예산안, 결산안 및 사업 보고

③ 의장은 제 2 항의 4 호, 5 호, 6 호와 7 호의 내용을 따로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일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집공고를 개최일 1 일 전까지 미룰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70 조(개회) 전한대회 회의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71 조(출석요구) ①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특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일 3 일 전까지 출석요구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석요구일

2. 출석요구 시간

3. 출석요구 이유

③ 출석요구 대상자가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석사유서를 학생총회 개최일 1 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석요구 대상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서 내용에 대한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전한대회는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결석사유서 또는 답변서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⑥ 출석요구서, 결석사유서와 답변서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72 조(의결) ① 전한대회 회의는 출석인원의 1/2 초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찬성이 반대와 동률일 경우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초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청문회 보고서 채택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출석인원 2/3 초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세칙 제정·개정·폐지

2. 상벌

3. 회비의 인상 및 인하

4. 특별위원회의 경고·제명·합병

⑤ 의결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하며, 표결이 끝나면 지체 없이 기명 공개한다.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무기명 표결 및 무기명 공개로 진행한다.

1. 의장, 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의 탄핵안

2. 특별기구에 대한 경고·제명·합병안

3. 징계안

⑦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표결 이전에 성원을 확인하여 의결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⑨ 의장은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및 기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73 조(안건) ① 전한대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상정한 안건

2.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상정한 안건

3.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상정한 안건

4.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상정한 안건

5. 본 회의 회원 1/10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상정한 안건

6. 전한대회 대의원 3 명 이상의 연서를 통하여 상정한 안건

7. 기타 의장이 요청한 안건

② 제 1 항 6 호에 따른 의장의 요청은 제 67 조 제 2 항 6 호 각 목을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74 조(결과공고) ① 전한대회 회의가 종료되면 의장은 24 시간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회일

2. 개회시간

3. 회의장소 및 온라인 주소

4. 전한대회 회의 안건

5. 각 안건의 의결 결과

[본조신설 2022.06.27.]

제 75 조(안건의 위임) ① 전한대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일주일 이내에 회칙해석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상임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안건은 회칙해석위원회 의결이 있더라도 제 1 항에 따라 위임할 수 없다.

1. 사임에 대한 안건
2. 해임에 대한 안건
3. 탄핵에 대한 안건
4. 청문회 보고서 채택

③ 의장은 회칙해석위원회의 위임 결정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회칙해석위원회는 제 1 항에 따라 안건이 위임된 즉시 각 호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임된 안건
2. 위임된 이유
3. 회칙해석위원회 실명 표결 결과
4. 다음 상임위원회 날짜

⑤ 회칙해석위원회에서 위임 결정이 나지 아니한 안건은 폐기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3 장 집행기구

제 1 절 회장

제 76 조(지위) 회장은 본 회 집행기구의 대표자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77 조(선출) ① 회장은 전한대회를 통하여 선출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한대회 선거일까지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이 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임명은 전한대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78 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다음해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 개최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79 조(권한) ① 회장은 집행기구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집행국장과 집행국원에 대한 임명권과 파면권이 있다.

⑤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집행국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0 조(의무) ① 회장은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모든 계획 및 활동을 학생총회 또는 전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다음 회장에게 적절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다음 회장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본 회 기구에, 회칙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회장은 본 회의 의결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1 조(사임) ①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임서를 제출하고,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사임할 수 있다. 사임서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② 회장이 본 회의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한대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2 조(탄핵) ①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소추(訴追)될 수 있다.

1. 전한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2. 본 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

②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세한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1. 탄핵안의 발의 이유

2.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3. 대표 발의인

③ 탄핵안이 소추(訴追)된 때부터 의결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순서대로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1. 부회장

2.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장

3.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원

4. 본 회의 회원

④ 의장은 탄핵안 소추(訴追) 일주일 이내에 전한대회 회의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절 부회장

제 83 조(지위)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궐위일 때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4 조(임명) 부회장은 회장이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장 중 1 명을 정하여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5 조(임기) 부회장의 임기는 제 80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6 조(권한 및 의무) ① 부회장은 제 79 조의 권한을 지니지 아니한다.

② 부회장의 의무는 제 80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7 조(사임) ① 부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의 동의를 통하여 사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부회장의 사임에 동의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부회장의 사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부회장이 사임하면,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장 중에서 1 명을 부회장으로 새롭게 임명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이 본 회의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회장은 48 시간 이내에 부회장의 사임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8 조(해임) ① 회장 또는 전한대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부회장을 해임시킬 수 있다. 단, 회장은 전한대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상임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전한대회에게 부회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회원은 학생총회, 전한대회 또는 회장에게 부회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른 사임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2 호의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해임안의 발의 이유

2.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3. 대표 발의인

[본조신설 2022.06.27.]

제 3 절 회장 당선인

제 89 조(지위의 제한) 회장 당선인은 본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본 회의 대표자가 아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0 조(적용 기간) 회장 당선인은 전한대회 선거일에 당선되어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에서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본 절에서 정하는 바의 권한 및 의무를 지닌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1 조(권한) ① 회장 당선인은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② 회장 당선인은 다음 중앙집행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회장 당선인은 인수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회장 당선인은 회장 또는 부회장이 인수를 태만하게 하거나 연락두절하는 등 인수를 방해하는 정황을 확인하였을 경우, 전한대회에 회장과 부회장의 징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전한대회 회의는 의결 전에 본 안건을 기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2 조(의무) ① 회장 당선인은 중앙집행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회장 당선인은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장 당선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장 당선인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회장 당선인은 모든 계획 및 활동을 학생총회 또는 전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장 당선인은 본 회 기구에, 회칙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회장 당선인은 본 회의 의결 업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3 조(사퇴) ① 회장 당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사퇴할 수 있다.

② 회장 당선인이 사퇴하면 의장은 일주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 당선인이 본 회의 회원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한대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4 조(당선 취소) ① 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 취소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통하여 발의될 수 있다.

1. 전한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2. 본 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

② 회장 당선인에 대한 당선 취소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선 취소안의 발의 이유

2.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3. 대표 발의인

③ 당선 취소안이 발의된 때부터 의결될 때까지 회장 당선인의 직무는 정지된다.

④ 의장은 당선 취소안 발의 일주일 내에 전한대회 회의를 소집하여 당선 취소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와 집행국

제 95 조(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6 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장, 집행국장과 집행국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7 조(회장) ① 중앙집행위원회의 대표와 관리 및 감독은 회장이 맡는다.

② 회장이 궐위일 때에는 부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전까지 임시 회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8 조(집행국장의 권한) ① 집행국장은 자신이 소속된 집행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② 집행국장은 본 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계획과 그 수행을 위한 예산 및 결산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집행국장은 제 2 항에 따른 본 회의 제반 활동을 집행할 수 있다.

④ 집행국장은 자신이 소속된 집행국에 한하여 집행국원을 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⑤ 집행국장은 회장의 지시가 제 5 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제 6 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9 조(집행국장의 의무) ① 집행국장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국장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집행국장은 본 회의 제반 활동을 집행할 때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집행국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집행국장은 집행국의 운영을 위한 집행국 내부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⑥ 집행국장은 집행국의 사업계획, 정책, 예산안과 결산안을 정리하여 전한대회 회의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⑦ 집행국장은 모든 계획 및 활동을 학생총회 또는 전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0 조(집행국원의 권한) ① 집행국원은 제 98 조 제 2 항에 따른 본 회의 제반 활동 집행을 보좌할 수 있다.

② 집행국원은 회장 또는 집행국장의 지시가 제 5 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제 6 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1 조(집행국원의 의무) ① 집행국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국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집행국원은 집행국장이 요청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집행국원은 집행국장이 주재하는 집행국 내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2 조(집행국장과 집행국원의 모집 및 결과공고) ① 회장 당선인은 당선 즉시 공고를 내어 집행국장을 모집하여야 한다. 단, 모집 기한은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집행국장은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의 임명 즉시 공고를 내어 집행국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단, 모집의 방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시모집은 임명 시기로부터 1 개월 이내에 1 회 실시한다.

2. 수시모집은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실시한다. 단, 집행국장은 수시모집 2 주일 전 까지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과 제 2 항의 모집공고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단, 회장 또는 집행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전단, 대자보 등의 매체로도 모집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④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은 제 1 항에 따른 집행국장 지원자가 집행국 당 2 명 이상일 경우, 면접을 통하여 해당 집행국의 집행국장을 선발하여야 한다.

⑤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은 제 2 항에 따른 집행국원 지원자가 선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지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모집이 종료되면 회장은 일주일 이내에 집행국장의 모집 결과를, 집행국장은 일주일 이내에 집행국원의 모집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 6 항의 결과공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단위

2. 모집기간

3. 합격자

4. 추후 수시모집 계획

⑧ 제 6 항의 결과공고는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단, 회장 또는 집행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전단, 대자보 등의 매체로도 결과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3 조(집행국장 또는 집행국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집행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집행국장이 사임하면, 회장은 본 회의 회원 중에서 1 명을 집행국장으로 새롭게 임명할 수 있다. 단, 전한대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집행국원은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집행국장의 해임은 제 88 조를 준용한다.

⑤ 회장은 집행국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단, 전한대회에 해임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집행국장은 집행국원의 해임을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해당 건의가 들어온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4 조(집행국의 수립) ① 회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하에 집행국을 둘 수 있다.

② 각 집행국에는 1 명 이하의 집행국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집행국장은 자신이 소속된 집행국의 대표자가 된다.

③ 각 집행국에는 1 명 이상의 집행국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임명 하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④ 각 집행국의 업무 범위, 권한과 의무 등의 내용은 「집행국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5 조(업무)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사무 전반을 집행하며, 「사무처리세칙」에 따른 서류를 제작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재무 전반을 담당하며, 「재정운용세칙」에 따른 서류를 제작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기록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29 조, 제 31 조와 제 32 조에 따른 학생총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사무처리세칙」에 따른 서류를 제작한다.

-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45 조에 따른 총투표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⑦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한대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 집행을 담당한다.
 - 가. 대의원 명단의 확정 및 전산화
 - 나. 전한대회 회의 장소 섭외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 다. 전한대회 회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 구비
 - ⑧ 중앙집행위원회는 학생총회 또는 전한대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집행을 담당한다.
- [본조신설 2022.06.27.]

제 106 조(권한)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국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 특별위원회의 결정 및 집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 특별위원회의 예산 삭감을 수반하는 경고 또는 제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또한 산하 특별위원회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 ⑤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국의 개국·개편 또는 폐국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전한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⑥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집행할 수 있다.
- ⑦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칙의 개정을 전한대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⑧ 중앙집행위원회는 세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전한대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⑨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8 조에 따른 본 회의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전한대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7 조(의무)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모든 계획 및 활동을 학생총회 또는 전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66 조에 따라 사업계획, 정책, 집행국장의 임명, 예산안, 결산안, 개국·개편 또는 폐국 등의 사안을 전한대회에서 의결받아야 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중앙집행위원회에게 적절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다음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집행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만 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회의 입장, 의견 또는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은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8 조(참관) ① 전한대회 대의원 또는 상임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사람들은 회장의 발언권 승인 없이 발언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사람들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④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진행이 현저히 방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 1 항의 사람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9 조(소집) ① 정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매월 1 회 개최한다.

- ② 임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집요구를 통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의 요청

2. 집행국장의 요청

[본조신설 2022.06.27.]

제 110 조(소집에 따른 사무) 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개최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연 4 회에 한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11 조(소집공고) ①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소집을 개최일 일주일 전에 집행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최일

2. 개최시간

3. 회의장소 및 온라인 주소

4.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안건

5. 각 안건에 대한 설명

③ 회장은 제 2 항의 4 호와 5 호의 내용을 따로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 109 조 제 1 항에 따른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재량으로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일주일 전에 집행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12 조(개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13 조(결정) 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집행 계획, 활동 방향을 출석인원 1/2 초과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 1 항에 따른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

③ 결정은 기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14 조(안건) 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 회장이 발의한 안건

2. 집행국장이 발의한 안건

3. 제 108 조에 따라 참관위원이 발의한 안건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3 호의 안건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정 또는 회장의 재량으로 심의·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15 조(결과공고) 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회장은 24 시간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회일
2. 개회시간
3. 회의장소 및 온라인 주소
4.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안건
5. 각 안건의 결정

[본조신설 2022.06.27.]

제 5 절 비상대책위원회

제 116 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위는 제 96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17 조(구성)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로 구성된다.

1. 회장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제 93 조에 따라 회장 당선인의 당선이 취소되었을 때
3. 제 95 조에 따라 회장 당선인이 사퇴하였을 때
4. 제 81 조에 따라 회장이 사임하였을 때
5. 제 82 조에 따라 회장이 탄핵되었을 때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과 집행국장, 집행국원으로 구성된다.

③ 제 2 항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의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18 조(비상대책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 중에서 결정된다. 단, 전한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과 의무는 제 79 조와 제 80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19 조(업무)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의 남은 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의 남은 임기가 180 일을 넘을 때
 - 가. 제 77 조에 따라 의장이 회장을 임명한다
 - 나. 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 나. 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회장 또는 회장 당선인의 남은 임기가 180 일을 넘지 않을 때
 - 가.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0 조(권한, 업무 및 의무) ① 제 119 조 1 호의 비상대책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제 207 조를 준용한다.

② 제 119 조 2 호의 비상대책관리위원회의 권한, 업무와 의무는 제 105 조, 제 106 조와 제 107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1 조(업무의 종료)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이 선출되어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된 즉시 해산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한 기간에 한하여 인수인계의 의무를 지닌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중앙집행위원회 업무의 인계에 협조할 수 있다. 단, 중앙집행위원회가 인수인계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 장 기초단위기구

제 1 절 상임위원회

제 122 조(지위) 상임위원회는 본 회의 상설 기초단위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3 조(구성)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2 호의 사람은 의결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정족수 등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2.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비상대책위원장

② 상임위원회는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새롭게 설립·폐지 또는 개편을 인가받은 경우, 즉시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상임위원 의석 배정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이 공석인 경우, 상임위원장은 해당 의석을 정족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발언권을 지니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른 대표는 제 1 항 2 호에 따른 상임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4 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의 대표와 진행은 상임위원장이 맡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선출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5 조(상임위원의 권한) ①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6 조(상임위원의 의무) ① 상임위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7 조(참관) ① 본 회의 회원은 상임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의결을 통하여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발언권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단, 다른 목적의 발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상임위원장은 제 2 항에 따른 발언권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즉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다수의 발언권 의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8 조(업무) ① 상임위원회는 학생총회 또는 전한대회에서 의결된 사안이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적용되고 전파되는 데 협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집행하는 사업이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적용되고 전파되는 데 협조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수렴하여 본 회 의결 과정 전반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자신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협조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29 조(의무) ① 상임위원회는 본 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에 본 회칙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본 회 의결기구의 의결을 존중하고, 본 회 집행기구의 집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30 조(소집) ① 정기 상임위원회 회의는 매월 1 회 개최한다.

② 임시 상임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집요구를 통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1. 제 75 조에 따른 전한대회 회의 안건의 위임으로 인한 의장의 요청
2. 1 호의 위임으로 인하지 아니한 상임위원장의 요청
3. 상임위원의 요청
4. 본 회의 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③ 제 2 항 3 호에 따른 소집요구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31 조(소집에 따른 사무) 상임위원회 회의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개최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32 조(소집공고) ① 의장은 상임위원회 회의 소집을 개최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최일
2. 개최시간
3. 회의장소 및 온라인 주소
4. 상임위원회 회의 안건
5. 각 안건에 대한 설명

③ 상임위원장은 제 2 항의 4 호와 5 호의 내용을 따로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는 전산화된 형태의 문서로 제작하여 온라인상의 공간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 130 조 제 1 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장의 재량으로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33 조(개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34 조(의결) ① 상임위원회 회의는 출석인원 1/2 초과와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의 재량으로 출석인원 2/3 초과와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의결은 기명으로 진행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35 조(안건)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상임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2. 상임위원이 상정한 안건

[본조신설 2022.06.27.]

제 136 조(결과공고) ① 상임위원회가 종료되면 의장은 24 시간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회일
2. 개회시간
3. 회의장소 및 온라인 주소
4. 상임위원회 회의 안건
5. 각 안건의 의결 결과

[본조신설 2022.06.27.]

제 137 조(안건의 위임) 상임위원회 회의 안건은 위임될 수 없으며, 폐기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절 지역한련

제 138 조(지위) 지역한련은 대한민국의 각 지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39 조(구성) 지역한련은 다음 각 호와 각 목으로 구성된다

1. 동한련
 - 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 나.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 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2. 서한련
 - 가.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3. 북한련

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라.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마.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

[본조신설 2022.06.27.]

제 140 조(지역한련 대표) ① 지역한련의 대표와 진행은 각 지역한련 소속 학생회장 중 1 명이 맡는다.

② 제 1 항의 대표는 지역한련 소속 학생회장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41 조(권한과 업무) ① 지역한련은 자체적으로 집행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전한련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역한련은 소속 지역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를 규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42 조(권한의 제한) 지역한련은 전한련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불응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3 절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제 143 조(지위)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받은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는 학생 자치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44 조(구성)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45 조(학생회장) ①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의 대표는 학생회장이 맡는다.

② 학생회장이 궐위일 때에는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회칙에 따라 규정된 비상대책위원회장이 학생회장의 대표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46 조(회원으로서의 대우) ①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제 3 조에 따른 회원으로 본다.

②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대표 발의인으로서 연서를 진행하거나 연서자로서 연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가 대표 발의인으로서 연서를 진행하거나 연서자로서 연서에 참여한 경우, 해당 학생회는 연서자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학생회장은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의 연서 발의 또는 연서 참여 여부에 관계 없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47 조(권리) ①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지닌다.

1.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본 회의 활동에 대하여 의사를 개진할 권리
3. 본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
4. 본 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에게 학생회의 사무처리를 요청할 권리
5. 학벌·지역·재학생 수·독자적인 연대활동 등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6. 전한련의 결정과 관계 없이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
7.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8. 전한련과 별개로 연대활동을 진행할 권리
9. 자체 회칙·세칙 또는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권리
10. 자체 회칙·세칙 또는 규칙에 따라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주체적인 의결과 집행을 진행할 권리

② 제 1 항 각 호의 권리가 침탈되었을 때, 본 회의는 학생회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총회, 전한대회 의결을 받은 학생회는 제 2 항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48 조(권리의 제한) ①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니지 아니한다.

②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제 128 조 제 2 항과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결 기구 의장 후보 또는 집행기구 회장 후보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③ 학생회장은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의결기구 의장 후보 또는 집행기구 회장 후보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소속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49 조(의무)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단위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3.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
4.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본조신설 2022.06.27.]

제 150 조(탈퇴) ①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한련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학생회의 탈퇴가 있더라도,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사람은 제 3 조에 따라 본 회의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학생회의 탈퇴가 있더라도,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 1 항에 따른 학생회의 탈퇴가 있는 경우, 의장은 전한대회를 통하여 탈퇴한 때로부터 최장 1 년까지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의 재가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제 1 항에 따른 학생회의 탈퇴가 있는 경우, 회장은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업무를 재가입 전까지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51 조(재가입) ① 제 150 조에 따라 탈퇴한 학생회가 전한련에 재가입할 경우에는 전한대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가입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한련에 가입비를 납부하겠다는 서약
2. 그해 전한련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서약
3. 그해 배정된 전한련 단위 연회비를 납부하겠다는 서약

[본조신설 2022.06.27.]

제 152 조(제명) ①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의 제명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발의될 수 있다.

1. 전한대회 대의원 2/3 이상의 연서
2. 해당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된 사람을 제외한 상임위원 전원의 동의

② 제 1 항 1 호의 조건은 다음 호의 조건으로 대체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원 1/2 이상의 연서

③ 의장은 제명안 발의 일주일 이내에 총투표를 실시하여 제명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53 조(회칙의 적용) ①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자체 의결을 통하여 전한련의 회칙·세칙 또는 규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본 회에서 제시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부정(否定)하거나 본 회의 회칙 또는 세칙에 상충하는 내용을 지닌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 판단할 경우에는 전한대회를 통하여 권고의 시한과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5 장 독립기구

제 1 절 감사위원회

제 154 조(지위) 감사위원회는 제 57 조 제 5 항에서 규정한 전한대회의 의무를 일임한 독립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55 조(구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총 3 명의 감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단, 전한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전한대회 대의원 1 명
2. 그 밖에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한 사람 2 명(단, 지원한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의원에서 인원을 충당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56 조(감사위원장) 의장은 감사위원 중 1 명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57 조(감사위원의 권한) ①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58 조(감사위원의 의무) ① 감사위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은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 회의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감사위원은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활동비 등의 지원금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감사위원은 본 회칙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59 조(참관) 본 회의 회원은 감사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나, 발언권을 얻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60 조(감사위원의 접촉)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감사위원과 감사업무 관련 접촉을 할 수 없다.

- ② 감사위원은 제 2 항의 접촉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전한대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다른 사람이 제 2 항의 접촉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감사위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 3 항에 따른 징계사실을 징계 일주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감사위원의 사과문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 2 항에 따라 접촉을 시도한 본 회의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61 조(감사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감사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사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이 사임하면, 의장은 제 136 조 각 호에 따라 감사위원을 새롭게 임명할 수 있다. 단, 전한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감사위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
- ④ 본 회의 회원은 학생총회와 전한대회에 감사위원의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 4 항에 따른 해임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2 호의 경우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해임안의 발의 이유
2.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3. 대표 발의인

[본조신설 2022.06.27.]

제 162 조(감사위원의 권한 위임) 감사위원의 권한은 위임될 수 없으며,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 제 161 조 제 1 항에 따라 사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63 조(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매반기 정기감사를 수행하고, 이를 해당 반기 전한대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비정기감사를 수행하고, 이를 해당 반기 전한대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64 조(권한)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 집행기구의 집행 내역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집행기구의 예산안 또는 결산안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일주일 이내의 범위에서 집행기구의 예산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감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예산 집행 정지 기간을 1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집행기구의 징계 수위를 제안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를 제안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재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본 회의 회원의 징계 수위를 제안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통하여 제 57 조 제 5 항의 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전한대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의 안건 상정은 제 73 조 제 6 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⑦ 감사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65 조(의무) ① 감사위원회는 정기 전한대회 회의 개최일 일주일 전까지 정기감사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전한대회에서 정기감사보고가 의결된 경우, 해당 보고를 일주일 내에 온라인상의 공간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66 조(승인) ① 감사위원회는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에서 감사위원 전원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승인 전의 감사위원 지목자는 제 157 조의 권한과 제 158 조의 의무를 지니지 아니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승인 전의 감사위원회는 제 163 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164 조의 권한과 제 165 조의 의무를 지니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67 조(출석요구)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일 3 일 전까지 출석요구 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석요구일
2. 출석요구 시간
3. 출석요구 이유

③ 출석요구 대상자가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석사유서를 학생총회 개회일 1 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석요구 대상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서 내용에 대한 답변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전한대회는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따른 결석사유서 또는 답변서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⑥ 출석요구서, 결석사유서와 답변서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68 조(비정기감사) ① 감사위원회의 비정기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감사요구를 통하여 집행기구와 특별위원회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

1. 의장의 요청
2. 전한대회 의결
3. 전한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4. 상임위원회 의결
5.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
6. 본 회의 회원 1/10 이상의 연서
7. 감사위원회의 결정

② 제 1 항 5 호와 6 호의 감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정기감사의 발의 이유
2. 연서자의 이름 및 학번
3. 대표 발의인

③ 제 1 항의 감사요구가 접수된 경우, 의장은 일주일 이내에 전한대회 회의를 소집하여 비정기감사 수행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비정기감사는 전한대회 의결로부터 2 주를 넘을 수 없다. 이는 전한대회 의결로도 연장될 수 없다.

⑤ 감사위원회는 비정기감사 후 일주일 이내에 전한대회에 비정기감사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전한대회에서 비정기감사보고가 의결된 경우, 해당 보고를 일주일 내에 온라인상의 공간에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 집행기구와 특별위원회는 그해 인준된 감사위원회의 비정기감사를 2 회 이상 받을 수 없다. 단, 재무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사안이 다를 경우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2 회 이상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절 회칙해석위원회

제 169 조(지위) 회칙해석위원회는 본 회의 의결·집행 과정에서의 정당함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한대회가 제 56 조의 권한을 일부 위임한 독립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70 조(회칙해석위원)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칙해석위원이 될 수 있다.

1. 전한대회에서 추천된 본 회의 회원 1 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본 회의 회원 1 명
3.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천된 본 회의 회원 1 명

② 제 1 항의 회칙해석위원은 각 호별 1 명, 총합 3 명을 넘을 수 없으며, 공석이 있더라도 다른 단위에서 회칙해석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③ 전한대회, 상임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칙해석위원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71 조(회칙해석위원의 권한) ① 회칙해석위원은 각 기구를 대표하여 본인의 회칙 해석을 표명할 수 있다.

② 회칙해석위원은 본 회 기구의 회칙 해석에 있어 다른 회원의 해석보다 우선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72 조(회칙해석위원의 의무) ① 회칙해석위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칙해석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칙해석위원은 본 회의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회칙 해석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회칙해석위원은 철저히 회칙에 근거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73 조(소집) ① 회칙해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집요구를 통하여 소집된다.

1. 제 38 조에 따른 안건의 위임
2. 제 75 조에 따른 안건의 위임
3. 의장 또는 부의장의 회칙 해석 요청
4. 회장 또는 부회장의 회칙 해석 요청
5. 전한대회 의결
6. 상임위원회 의결
7.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8. 회칙해석위원회의 만장일치를 통한 의결

[본조신설 2022.06.27.]

제 174 조(소집에 따른 사무) ① 회칙해석위원회는 소집요구가 이루어지면 3 일 이내에 첫 회칙해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회칙해석위원회 회의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개최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③ 회칙해석위원회 회의는 최소 2 회 이상의 회칙해석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해석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75 조(개회공고) ① 회칙해석위원회는 회칙해석위원회 회의의 개회 사실을 개회 당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회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회일

2. 개회시간
3. 이견이 있는 회칙·세칙 또는 규칙의 조항
4. 3 호에 대한 각 단위의 주장
5. 해석하여야 하는 이유

[본조신설 2022.06.27.]

제 176 조(개회) ① 회칙해석위원회 회의는 회칙해석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칙해석위원이 제 174 조 제 1 항에 따른 참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단위는 다른 본 회의 회원을 추천하여 회칙해석위원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위가 회칙해석위원을 소집요구 3 일 이내에 추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의견을 기각하고, 회칙해석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회칙해석위원회 회의를 개회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77 조(해석) ① 회칙해석위원회는 본 회칙을 우선하여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

② 회칙해석위원회는 각 단위에서 주장하는 회칙의 해석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단, 제 154 조 제 3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칙해석위원회는 소집요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 주 이내에 회칙의 해석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회칙해석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론회를 개최하여 본 회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회칙해석위원회는 본 회칙의 단어나 문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⑥ 회칙해석위원회의 해석 안건은 회칙 개정에 대한 긍정문으로 발의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78 조(기존 해석의 변경) ① 학생총회가 아니면 회칙해석위원회의 해석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칙해석위원 전원이 기존 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의 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79 조(안건의 심사) ① 회칙해석위원회는 학생총회 또는 전한대회 의결 안건이 본 회칙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심사에서 저촉되는 지점이 발견된 경우, 회칙해석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각 목의 대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총회의 안건이 본 회칙에 저촉되는 경우

가. 안건의 회칙 저촉 사실 공표

나. 안건의 기각에 대한 안건 또는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 발의

2. 전한대회 회의 안건이 본 회칙에 저촉되는 경우

가. 안건의 회칙 저촉 사실 공표

나. 안건의 기각 여부 의결

③ 제 2 항 1 호 나목의 안건은 회칙에 저촉되는 안건이 더 이상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 안의 개정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 2 호 나목의 의결이 가결된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전한대회에서 해당 안건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 2 항 2 호 나목의 의결이 부결된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전한대회에서 해당 안건의 의결을 연기하고, 해당 안건이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칙개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한대회를 통하여 해당 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⑥ 회칙해석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발의한 안건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80 조(안건의 위임) ① 회칙해석위원회는 제 38 조와 제 75 조에 따른 안건의 위임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회칙해석위원회는 본 회칙에 근거하여 안건의 위임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81 조(해석의 의결) ① 회칙해석위원회 회의의 해석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각 목을 따른다.

1. 전원 찬성인 경우: 가결

2. 전원 반대인 경우: 부결

3. 1 명 찬성, 2 명 반대인 경우

가. 제 177 조에 따른 해석의 부결

나. 제 178 조에 따른 기존 해석의 유지

다. 제 179 조 제 2 항 나목에 따른 안건의 기각

라. 제 180 조에 따른 안건 위임의 부결

4. 2 명 찬성, 1 명 반대인 경우

가. 제 177 조에 따른 해석의 가결

나. 제 178 조에 따른 기존 해석의 유지

다. 제 179 조 제 2 항 나목에 따른 안건의 기각

라. 제 180 조에 따른 안건 위임의 가결

② 회칙해석위원은 안건에 기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82 조(결과공고) ① 회칙해석위원회는 제 180 조에 따라 의결이 이뤄진 때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결과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든 회칙해석위원회 회의 날짜

2. 모든 회칙해석위원회 회의의 회의장소 및 온라인 주소

3. 이견이 있는 회칙·세칙 또는 규칙의 조항

4. 의결된 해석

② 제 2 항 4 호의 해석이 제 156 조 제 1 항 3 호, 4 호와 같이 의결된 경우, 회칙해석위원회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모두 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83 조(기록) ① 회칙해석위원회의 모든 회의기록과 해석 내용은 최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② 회칙해석위원회의 모든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라야 한다.

③ 제 2 항에 따른 서식이 「사무처리세칙」이 없는 경우, 회칙해석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기록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른 자체 서식은 제 73 조 6 항의 안건으로 전한대회를 통하여 「사무처리세칙」에 추가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6 장 특별기구

제 1 절 자문위원회

제 184 조(지위)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전한대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85 조(설치)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각 목의 업무 또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가. 의장의 인수인계

나. 의장의 비서

다.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업무

2. 전한대회 산하 자문위원회

가. 제 104 조에 따른 집행국장의 해임

나. 제 17 조에 따른 의장의 탄핵

다. 제 82 조에 따른 회장의 탄핵

라. 제 88 조에 따른 부회장의 해임

마. 제 150 조에 따른 각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의 탈퇴

바. 본 회의 회원의 상벌

사. 회비의 인상 및 인하

아. 회칙·세칙 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자.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안건

② 의장 또는 전한대회는 자문위원회를 신설할 때, 자문의 범위를 제 1 항 각 호에 한정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전한대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해산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86 조(업무) 자문위원회는 제 185 조에 따라 한정된 범위의 영역에서 의장 또는 전한대회의 자문에 응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87 조(제한) ① 자문위원회는 본 회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의장과 전한대회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③ 의장과 전한대회는 자문위원회에 답변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자문위원회는 의장과 전한대회의 자문 내용이 제 185 조에 따라 한정된 범위의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자문 내용에 답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의장과 전한대회는 자문위원회를 의결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절 특별위원회

제 188 조(지위) 특별위원회는 의장, 전한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설치한 상설기구이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89 조(구성) 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0 조(요건) 의장, 전한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직속 또는 산하의 특별위원회로서 설치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활동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지닌다
2. 본 회의 대외활동과 관련된다
3. 특정 분야에 관련된 자치단체를 연합하고 대표한다
4. 본 회의 특별회비 집행을 주도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1 조(신청) ① 의장, 전한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특별위원회의 명칭
2. 특별위원
3. 특별위원회 사업계획
4. 특별위원회 규칙
5. 특별위원회 예산안
6. 본 회의 회원 20 명 이상의 추천서

② 제 1 항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③ 제 1 항 4 호의 규칙은 본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2 조(승인) 전한대회는 제 191 조 제 1 항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제 66 조의 의무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3 조(협조 의무) ① 특별위원회는 소관하는 바의 의장, 전한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의장, 전한대회 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4 조(업무) 특별위원회는 전한대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5 조(권한) ① 특별위원회는 전한대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관련된 대외단체에 한하여 본 회의 연대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전한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관련된 집행 사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추천하고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6 조(의무) ① 특별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모든 계획 및 활동을 학생총회 또는 전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제 66 조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안, 결산안과 신설·개편 또는 해산 등의 사안을 전한대회에서 의결받아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다음 특별위원회에게 적절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다음 특별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본 회의 입장, 의견 또는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7 조(규칙) ① 특별위원회의 규칙은 본 회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의장은 본 회에서 제시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부정(否定)하거나 본 회의 회칙 또는 세칙에 상충하는 내용을 지닌 특별위원회 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 판단할 경우에는 전한대회를 통하여 권고의 시한과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7 장 선거

제 1 절 의결기구장 선거

제 198 조(의장 선거) ① 의장 선거는 본 회의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시행된다.

② 의장의 당선은 다음 각 호와 각 목을 따른다.

1. 의장 후보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가. 유권자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된다.

나. 유권자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개표확인 일주일 이내에 재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2. 의장 후보자가 1 명 이하인 경우

가. 유권자 2/3 이상의 득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99 조(시기) 의장 선거는 전한대회 선거일에 시행한다. 단,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의장 선거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00 조(선거권) ① 본 회의 회원은 의장 선거권을 지닌다.

② 제 12 조 제 2 항에 따라 전한대회에서 의장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의장 선거권을 지닌 사람을 전한대회 대의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 57 조 제 2 항에 따른 전한대회 참관 대의원은 제 2 항에 따른 의장 선거권을 지니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은 1 인 1 표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01 조(피선거권) 의장 피선거권은 상임위원회의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02 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의장 선거가 시행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순서대로 될 수 있다.

1. 의장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과 회장을 제외한 전한대회 대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세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절 집행기구장 선거

제 203 조(회장 선거) ① 회장 선거는 본 회의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시행된다.

② 회장의 당선은 다음 각 호와 각 목을 따른다.

1. 회장 후보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가. 유권자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된다.

나. 유권자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개표확인 일주일 이내에 재투표로 당선을 결정한다.

2. 회장 후보자가 1 명 이하인 경우

가. 유권자 2/3 이상의 득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04 조(시기) 회장 선거 시기는 제 199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05 조(선거권) ① 전한대회 대의원은 회장 선거권을 지닌다.

② 제 57 조 제 2 항에 따른 전한대회 참관 대의원은 제 2 항에 따른 회장 선거권을 지니지 아니한다.

③ 선거권은 1 인 1 표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06 조(피선거권) 회장 피선거권은 전한대회 대의원으로 한정한다. (단, 집행기구 경험이 있는 본 회의 회원도 피선거권을 지닌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07 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02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8 장 재정

제 1 절 총칙

제 209 조(목적) 본 회의 재정은 전한련의 운영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0 조(원칙) ① 본 회의 재정은 본 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② 본 회의 재정 운용 주체는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재정은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수익을 본 회와 본 회의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 자산은 본 회의 기구와 회원에 우선적으로 대여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1 조(적용) 본 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기초단위기구, 독립기구와 특별기구는 본 회칙의 재정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2 조(책임) ① 본 회의 재정 운용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전한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에 있다.

② 본 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기초단위기구, 독립기구와 특별기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재정 운용에 관한 협조 요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전 회계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임기를 종료한 관리자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증빙 과정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3 조(자산) ① 본 회의 유·무형의 동산, 부동산과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를 본 회의 자산이라 한다.

② 본 회의 자산은 집행기구, 독립기구 또는 특별기구가 취득, 보관, 사용 또는 처분한다.

③ 집행기구는 제작, 구매, 수증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얻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것은 집행기구의 자산으로 본다.

1. 얻는 과정에서 본 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2. 회장, 집행국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이 그 직으로써 얻은 것

3. 본 회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얻거나, 그 결과로 얻게 된 것

④ 독립기구의 자산 운용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본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특별기구의 자산 운용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본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4 조(수입) ① 본 회 재정의 수입은 회비, 후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한다.

② 본 회 재정의 수입은 의장, 부의장, 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개인에게 도달할 수 없으며, 의장, 부의장, 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은 본 회에서 제공하는 활동장려금 외에 그 직으로써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본 회 재정은 본 회의 법인계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5 조(정기회비) ① 본 회의 정기회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단위 연회비: 의결기구, 기초단위기구, 독립기구를 운용하기 위한 회비

2. 사업 회비: 집행기구, 특별기구를 운용하기 위한 회비

② 본 회의 단위 연회비는 본 회 소속 학생회가 부담하여 납부한다.

③ 제 2 항에 따른 회비는 본 회 학생회간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

④ 본 회의 사업 회비는 본 회의 회원이 부담하여 납부한다.

⑤ 제 4 항에 따른 회비는 본 회의 회원간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

⑥ 전한대회는 그해 마지막 전한대회 회의에서 회비의 조정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⑦ 중앙집행위원회는 단위 연회비로 의결기구, 기초단위기구의 집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단, 독립기구는 단위 연회비를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⑧ 본 회의 정기회비를 연 2 회 이상 징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6 조(특별회비) ① 본 회의 특별회비 납부에 대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목의 사람이 요청할 수 있다.

1. 전한련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가. 의장

나. 회장

2. 전한련이 결사를 구성 또는 참여하거나 집회를 주도할 경우

가. 회장

나. 부회장

3. 전한련이 제 5 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언론·출판을 주도할 경우

가. 회장

나. 부회장

4. 전한련이 학생 문화 발전 또는 교류를 위한 행사를 주도할 경우

가. 회장

나. 부회장

- ② 제 1 항 각 호와 각 목의 사람이 특별회비 납부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면, 전한대회는 요청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특별회비 납부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라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취지의 안건이 다시 전한대회 회의에 발의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안건이 발의되었을 경우 해당 안건은 의결 결과에 상관없이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 ④ 제 2 항에 따라 안건이 부결되었을 경우라도 같은 취지의 안건이 학생총회에 발의될 수 있다. 단, 해당 발의는 제 28 조에 따른 소집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7 조(세부사항) 단위 연회비와 사업 회비의 분배 및 세부사항은 「제정운용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절 활동비

제 218 조(의장의 활동비) ① 의장은 본 회의 활동을 위하여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교통비
2. 식사비
3. 숙박비

③ 의장은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최대한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면 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대면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경위를 전한대회 회의와 정기감사에서 밝혀야 한다.

④ 활동비의 세부 내역은 정기감사의 대상이 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19 조(회장의 활동비) ① 회장은 본 회의 활동을 위하여 전한대회 회의의결을 통하여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교통비
2. 식사비
3. 숙박비

③ 회장은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최대한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대면 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대면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경위를 전한대회의와 정기감사에서 밝혀야 한다.

④ 활동비의 세부 내역은 정기감사의 대상이 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0 조(중앙집행위원회의 활동비)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활동을 위하여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교통비

2. 식사비

③ 활동비의 세부 내역은 정기감사의 대상이 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1 조(특별기구의 활동비) 특별기구는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2 조(독립기구의 활동비) 독립기구는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3 조(기초단위기구의 활동비) 기초단위기구는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4 조(예산의 집행) ① 본 회 집행기구, 독립기구, 특별기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교통

2. 식사

3. 숙박

4. 1 호부터 3 호에 준하는 활동

② 의장은 제 1 항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으로 비정기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4 조의 2(특별회비의 예산 집행) ① 제 190 조 4 호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는 제 221 조와 제 224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이 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활동비 지원

2. 다음 각 목의 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가. 교통

나. 식사

다. 숙박

② 제 1 항 1 호에 따른 활동비 지원은 예산안이 작성되기 전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작성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한대회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5 조(세부사항) 활동비의 운용 및 세부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3 절 활동장려금

제 226 조(수혜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본 회로부터 활동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 의장

2. 회장

② 의장과 회장의 활동장려금 금액은 같아야 한다.

③ 전한대회는 그해 마지막 전한대회 회의에서 차기 의장과 회장의 활동장려금 금액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7 조(재원) ① 활동장려금의 재원은 후원금을 우선한다.

② 본 회의 활동장려금은 단위 연회비, 사업 회비로부터 출연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8 조(지급시기) ① 활동장려금은 연 2 회 지급하며, 최소 1 회의 활동장려금은 임기 마지막날에 지급되어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장려금의 액수는 두 시기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③ 활동장려금은 임기 도중에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29 조(형태) 활동장려금은 대한민국 원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30 조(감사 면제) 제 226 조 제 1 항의 수혜 대상의 활동장려금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31 조(탄핵) ① 제 226 조 제 1 항의 수혜 대상이 제 17 조 또는 제 82 조에 의해 탄핵되었을 경우에는, 탄핵 의결 즉시 활동장려금을 전액 본 회 법인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제 1 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의 반납을 위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32 조(세부사항) 활동장려금 운용의 세부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4 절 회계

제 233 조(회계기간) 본 회의 회계기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반기: 그해 3 월 1 일 ~ 그해 8 월 31 일

2. 후반기: 그해 9 월 1 일 ~ 그해 2 월 28 일(단, 윤년의 경우 2 월 29 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34 조(심의) ① 의장 직속 특별위원회는 전한대회 회의 개회일 3 일 전까지 의장에게 예산안·결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지체 없이 회장에게 해당 예산안·결산안을 회장에게 전달한다.

② 전한대회 산하 특별위원회는 전한대회 회의 개회일 3 일 전까지 의장에게 예산안·결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지체 없이 회장에게 해당 예산안·결산안을 회장에게 전달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집행국, 특별위원회는 전한대회 회의 개회일 3 일 전까지 회장에게 예산안·결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1 항,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른 예산안·결산안 제출기한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35 조(회계의 공개) ① 전한대회에 보고되는 모든 예산안·결산안은 공개되어야 한다.

② 의장, 전한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회원이 회원가입, 인증, 기타 본인 확인의 절차 없이 본 회의 회계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예산안·결산안은 부결된 것도 포함하며, 이 경우에는 비고란에 전한대회 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놓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36 조(예산 승인의 제한) 임시 전한대회 회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37 조(재심의) ① 전한대회는 예산안·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출석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기구의 회비 지급을 유보하고 재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기구는 전한대회 회의 개회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전한대회에 제출한다.

③ 전한대회는 제 2 항에 따른 수정안을 바탕으로 전한대회 회의 개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제 2 항에 따른 수정안의 공고는 제 74 조를 준용한다.

⑤ 제 2 항에 따른 수정안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9 장 회칙·세칙 또는 규칙

제 1 절 회칙

제 238 조(발의) ①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전한대회 의결
2. 전한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3. 제 179 조 제 5 항에 따른 의장의 요청
4. 본 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

② 제 1 항의 발의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39 조(공고) ① 의장 또는 임시의장은 제 37 조, 제 55 조 또는 제 74 조에 따른 공고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 신·구문 대비표
3. 연서자의 이름, 학번

4. 대표발의인

[본조신설 2022.06.27.]

제 240 조(의결)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학생총회의 경우 제 35 조를 따른다.
2. 총투표의 경우 제 50 조를 따른다.
3. 전한대회 회의의 경우 제 72 조 제 3 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41 조(공포) ① 의장은 제 62 조에 따라 의결된 회칙 개정안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4 시간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 신·구조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개정 찬성 명단

② 학생총회와 총투표에서 회칙 개정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 1 항 4 호의 내용을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회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42 조(정리) 회칙 개정안의 의결 이후 공포 전까지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정리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절 세칙

제 243 조(세칙·규칙) 전한대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세칙에 따라 규칙을 제정·개정한다. 단, 일반규칙·임시규칙은 세칙에 그 제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도, 필요할 때에 제정·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44 조(세칙·규칙의 무효) ① 본 회칙에 저촉되는 세칙은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② 본 세칙에 저촉되는 규칙은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③ 특별기구의 규칙은 본 회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본 회칙에 저촉되는 규칙은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45 조(세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①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② 세칙은 전한대회에서 개정·제정 또는 폐지를 의결한다.

③ 제 2 항에 따른 의결은 제 72 조 제 4 항을 따른다.

④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해당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세칙 개정안의 공포는 제 241 조를 준용한다.

⑥ 세칙 개정안의 정리는 제 242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46 조(규칙의 제정·개정·폐지) ① 일반규칙은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② 임시규칙은 특정 기간 동안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③ 일반규칙과 임시규칙은 해당 세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3 절 해석 및 공개

제 247 조(해석의 원칙) ① 전한련 회칙, 세칙과 규칙에 대한 일차적인 해석의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전한련 회칙, 세칙과 규칙에 대한 의장의 해석은 회칙해석위원회의 해석으로 번복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한련 회칙, 세칙과 규칙에 대한 회칙해석위원회의 해석은 학생총회로 번복할 수 있다.

④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 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48 조(공개에 원칙) ① 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본 회의 회원에게 매년 공표한다.

1.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전한련 회칙

2.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전한련 세칙

3. 편찬 당시 효력이 있는 전한련 규칙

4. 편찬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회칙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② 제 1 항 각 호의 배포는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상임위원회는 그 배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1 항 각 호의 내용을 전산화된 형태로도 제공하여야 하며, 본 회의 회원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10 장 상벌

제 1 절 수상(授賞)

제 249 조(배지) ① 전한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배지를 제공한다.

1. 의장

2. 회장

3. 대의원

4. 집행국장

② 배지의 디자인은 세칙으로 정하며, 전한련은 배지의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지는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에서 제공하며, 의장은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그 때를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0 조(경력증명) ① 전한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전한련에서 봉사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 의장

2. 부의장

3. 대의원

4. 회장

5. 부회장

6. 집행국장

7. 집행국원

8. 감사위원

9. 회칙해석위원

10. 특별위원

11. 자문위원

② 전한련은 제 1 항의 사람이 요청할 때, 지체 없이 경력 사실에 대한 문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상의 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봉사 사실 기록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④ 제 2 항에 따른 경력 사실에 대한 문서 서식은 「사무처리세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1 조(임명장) ① 전한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임명장을 제공한다.

1. 의장

2. 회장

3. 대의원

4. 집행국장

② 임명장의 디자인은 세칙으로 정하며, 전한련은 임명장의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임명장은 전반기 전한대회 회의에서 제공하며, 의장은 전한대회 의결을 통하여 그 때를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2 조(상금의 제한) ① 전한련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금, 상품 또는 그에 준하는 물건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장

2. 부의장
3. 대의원
4. 회장
5. 부회장
6. 집행국장
7. 감사위원
8. 회칙해석위원
9. 특별위원
10. 자문위원

② 사임, 해임 또는 탄핵을 통하여 제 1 항에 따른 직위에서 물러난 사람은, 사임, 해임, 또는 탄핵을 당한 그해 동안 제 252 조의 적용을 받는다.

③ 의장은 제 1 항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감사위원회에 즉각적으로 비정기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3 조(감사장) ① 전한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감사장을 제공한다.

1. 부의장
2. 부회장
3. 집행국원
4. 감사위원
5. 회칙해석위원
6. 그 외 전한련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

② 감사장의 디자인은 세칙으로 정하며, 전한련은 감사장의 디자인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장은 제 1 항에 따른 사람이 해당 직위에서 물러날 때 제공한다.

④ 제 2 항에 따른 감사장의 내용에는 해당 직위와 봉사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 6 호에 따른 사람은 전한대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4 조(불명예 조치) ① 제 249 조 또는 제 251 조에 따라 배지 또는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해임 또는 탄핵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제공되었던 배지 또는 임명장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른 사람이 사임하였을 때에도 제 1 항을 적용한다.

④ 제 250 조에 따라 경력증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해임 또는 탄핵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력증명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 4 항에 따른 사람이 사임하였을 때에는 제 4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 253 조에 따라 감사장을 받을 사람이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감사장을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제 6 항에 따른 사람이 사임하였을 때에는 제 6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 절 처벌(處罰)

제 255 조(징계의 원칙) ① 본 회의 회원의 징계는 본 회칙, 세칙과 규칙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 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회장을 포함한 본 회의 각 기구는 독단적으로 본 회의 회원을 징계할 수 없다.

④ 본 회의 각 기구는 본 회의 회원을 제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6 조(징계 요구) ① 본 회의 회원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요구를 통하여 회칙해석위원회가 소집된다.

1.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
3. 상임위원회 의결
4.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
5. 본 회의 회원 1/10 이상의 연서
6. 전한대회 대의원 1/5 이상의 연서
7. 의장 또는 회장의 요청

② 의장과 회장은 본 조항에 따라 징계할 수 없다. 단, 제 17 조와 제 82 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각 기구는 본 조항에 따라 징계하지 아니하고, 학생총회, 총투표, 전한대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구의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6 조(회칙해석위원회) ① 본 회의 회원의 징계는 우선적으로 회칙해석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칙해석위원이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제 170 조에 따른 단위는 다른 본 회의 회원을 추천하여 회칙해석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칙해석위원회 회의의 개최는 제 176 조를 준용한다.

④ 회칙해석위원회 회의의 징계 절차는 제 177 조를 준용한다.

⑤ 회칙해석위원회 의결은 제 181 조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제 181 조 제 1 항 3 호 가목과 제 181 조 제 1 항 4 호 가목을 따른다.

⑥ 회칙해석위원회 회의의 결과공고는 제 182 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7 조(전한대회) ① 제 256 조에 따라 의결된 징계안은 전한대회 동의를 거쳐 채택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전한대회 동의는 제 72 조 제 1 항의 의결을 준용한다.

③ 전한대회는 1 회에 한해 회칙해석위원회의 징계안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라 징계안이 반려되면, 회칙해석위원회는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징계안을 작성하여 전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징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결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정족수 등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한대회 동의를 얻지 못한 징계안은 파기된다.

[본조신설 2022.06.27.]

제 258 조(징계의 수위) ① 징계의 수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단, 회칙해석위원회는 세칙 또는 규칙을 통하여 징계 수위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과문 작성

2. 직위 정지

3. 업무 정지

4. 활동장려금 삭감

5. 제 254 조에 따른 불명예 조치

② 제 1 항 4 호에 따른 삭감은 전액을 할 수 있으며, 활동장려금을 받는 사람에게 활동장려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6.27.]

부칙 [본조신설 2022.06.27.]

1. 본 회칙은 2023 년 제 1 차 전한대회일부터 효력을 지닌다.